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2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24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98.12.9)원안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조치승 재무과장)

#### 가.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 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5836호) 되므로서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 3, 제38조의 3)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함.(안 제22조 제4항 제8호, 제9호, 제28조 제2항)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제4항, 제28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잠중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 건설목적에 사용토록 매각 또는 대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98. 7.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관련 조항과 행정자치부 준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각조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 대부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을 구분토록 신설하였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하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되 원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화시켰으며, 공장건설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는 전액감면 사업규모에 의거 75% 감면, 50%감면, 대상사업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 기타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공유잠중 재산처분시 100㎡이하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설정, 대부료 납기, 연체요율 등 현실에 맞지않은 부분을 행정자치부 준칙과 각각위에 해당되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이를 위반시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 12. 9 ----- 김 인 위 원
- 나. 수정이유 : 제10조 용어의 표현을 시 준칙안과 같이 동일하게 수정
- 다. 수정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제10조(재산증감 및 현황)

7. 심사결과 : 수정의결